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2. 7 선고 2022가단12563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

담당변호사 임시중

피고 주식회사 A

변론종결 2022. 12. 20.

판결선고 2023. 2. 7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91,006,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3. 28.부터 2022. 7. 19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 및 판단

가. 청구원인사실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수용재결 보상금 91,006,100원 및 이에 대하여
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수용재결 취소에 따른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다음날인 2019. 3.

28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. 7. 19.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%, 그 다음날부터 갚는
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
있다.

라.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

피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235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이
진행되고 있는데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의 횡포하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8호증의
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실효된 수용재결을
근거로 수령한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별건
소송으로 보이는바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관용

별지